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제출년월일 : 2013. 04. 4.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고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나. 세부 허가기준(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안전거리 : 법정 안전거리의 2배 적용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 대상지역 :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 연결도로 :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속
- 시설기준 : 사무실, 용기보관실, 주차장용 일정면적 보유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3. 03. 05. ~ 2013. 03. 25.(20일간)
- 의견내용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고시(「안산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고시」)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법 제4조 및 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소 관 과		녹색에너지과
입 안 자	녹색에너지과장	이 성 운
	에너지자원계장	박 종 남
	담당자	이 륵 만 (031-481-2840)

##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대상지역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단,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준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함.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p>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p> <p>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을 할 것.</p> <p>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p> <p>라.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p>
총 전 사 업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sup>1)</sup> 으로부터 보호시설 <sup>2)</sup> 까지는 규칙 별표3 제1호가록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71
----------	------

제안년월일 : 2013. 4.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사업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수정함.

## **□ 주요골자**

- 제3조(허가요건) 별표의 충전사업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대부분 지역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 (안 제3조 별표)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 표]

### 액화석유사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요 건
	대상지역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다만,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준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함.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을 할 것.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연결도로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 다만, 대부분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함.
충 전 사 업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sup>1)</sup> 으로부터 보호시설 <sup>2)</sup> 까지는 규칙 별표3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정안		
구 분	허가 요건		구 분	허가 요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대상 지역	(생 략)	대상 지역	(원안과 같음)	
	시설 기준	(생 략)	시설 기준	(원안과 같음)	
	연결 도로	(신 설)	연결 도로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 다만, 대부동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함.	
	충전사업 안전 거리	(생 략)	안전 거리	(원안과 같음)	